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99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김성원 · 박성훈 · 안철수
김은혜 · 이현승 · 김선교
정동만 · 고동진 · 박충권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가의 희생 보상 책임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유족의 예우와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문제로 이어짐.

이에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1회 한정 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가유공자의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신청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족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신체검사) ①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신체검사)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유공자의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신청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족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